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85조(잔재물등의 처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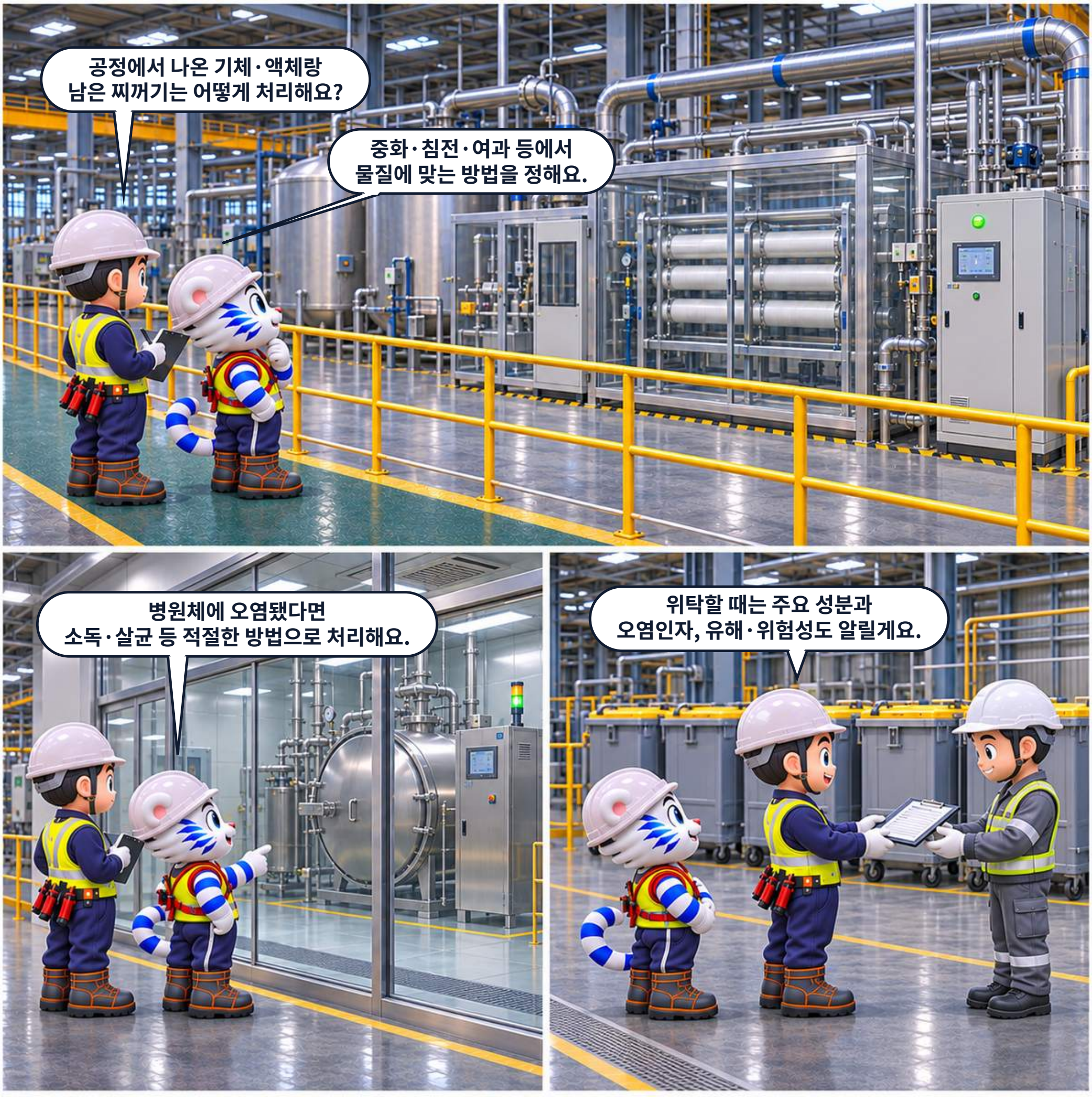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85조(잔재물등의 처리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, 액체 또는 잔재물 등(이하 “잔재물등”이라 한다)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 · 침전 · 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· 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,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 ·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24